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업종(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간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위탁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)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(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업종(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간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 4. ~ 9. (현행과 같음) <u>제34조의2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위탁)</u>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.</u>
4. ~ 9. (생략) <u><신 설></u>	